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103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정점식·김도읍·성일종

박충권 • 고동진 • 서명옥

신성범 • 강명구 • 정희용

박덕흠 · 김장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대상물 중 선박의 경우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 청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도시들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번 히 발생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 해안 순찰 및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이소방 당국보다 선박 화재를 먼저 발견하거나 주민들에 의해 발견될시 주민들은 익숙한 해경으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함. 이때 해경으로 먼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항구 등은 해경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화재 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아닌 관계 행정기관이 화재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생 략)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 또		
	는 소방서가 아닌 관계 행정기		
	관이 화재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7조(과태료) ① <u>제19조제2항</u> 에	제57조(과태료) ① <u>제19조제3항</u>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			
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